

# 강원도립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0-09-16 규정 제268호  
(개정) 2016-04-11 규정 제394호  
(개정) 2016-10-20 규정 제424호  
(개정) 2017-03-22 규정 제462호  
(개정) 2019-05-22 규정 제462호  
(개정) 2019-05-30 규정 제521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교수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제2조(기능)** 본 센터는 아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4.11., 2016.10.20.>

1. 교수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법 및 학생교육 개발 운영
3. 비정규 기초소양 및 창의적 교육 개발 및 운영
4. 기초학습 및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개정 2019.5.30.>
5. 학생 학습 향상 및 평가체제 구축운영 및 환류
6. 교육 매체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성 및 봉사 교과목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30.>
9. 기타 교수학습지원 및 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지원 <개정 2019.5.30.>

## 제 2 장 조 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4.11.>

**제4조(조직)** 센터에는 교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4.11., 2016.10.20.>

**제5조(조직구성)** 센터에는 교수지원팀, 학습지원팀, 교육평가팀을 둔다. 각 팀에는 필요에 따라 팀원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6.4.11.>

**제5조의2 (업무분장)** ① 교수지원팀은 교수법의 연구, 개발,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16.10.20.>

② 학습지원팀은 학습법의 연구, 개발,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16.10.20.>

③ 교육평가팀은 프로그램의 종합적 성과 분석·개선·환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16.10.20.>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센터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4.11.>

**제7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6.4.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교학처장, 기획홍보처장, 취창업정보센터장, NCS지원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학생을 대표하는 2명을 포함하여 조교 2명, 직원 1명을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학생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4.11., 2017.3.22.>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4.11.>

④ 운영위원회 간사를 두되 교수학습센터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4.11.>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4.11.>

1. 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계획 및 운영과 주요 사업
2. 운영 프로그램의 운영지침, 개선, 평가 및 환류
3. 규정의 개정과 폐지
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신설 2016.4.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센터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6.4.11.>

### 제 4 장 운영 및 평가

**제10조(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 운영은 각 프로그램별 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16.10.20.>

**제10조의2(평가)** 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을 연 1회 평가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6.4.11.>

② 평가 결과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음 해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여 환류 되도록 한다. <신설 2016.4.11.>

### 제 5 장 재정

**제11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대학의 예산과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4.11.>

**제12조(회계)** 센터의 회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신설 2016.4.11.>

### 제 6 장 보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부칙(2010. 9.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11.)**

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0.)**

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22.)**

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